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674호

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

#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 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 는 것임.

# 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3조)

: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 결과 추가

나.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(안 제5조)

: 2022년 5월 1일 ~ 2022년 9월 30일 (5개월, 연장)

다. 유가보조금 지급단가(안 제9조)

: 기준가격을 1,750원/ℓ로 변경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  - 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다. 기타 참고사항
  - 라. 보내실 곳
    -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    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4018, 4019, 4020(팩스 044-201-5601)

# 4. 기타

○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 go.kr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